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는 1993 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고등법원 박용상 부장판사와 서울형사지방법원 양삼승 부장판사에게 의뢰, 연구자들로부터 현행법률의 개정안과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단일법안을 제출받았다. 이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단일법안은 그 내용이 언론피해구제에 대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거론하고 있어 언론 법제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되어 법안취지와 법률안을 게재한다. 이 법안취지는 양삼승 부장판사가 대표 집필하였다.....편집자 주

1. 머리말

1. 언론중재제도의 발전과정

가.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내용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언론기본법」은 1981. 1. 1. 부터 제정 시행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언론에 보도된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론권」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현에 있어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나. 위 법은 약 7 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위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의 비민주적 요소들이 문제가 되어, 위 법은 폐지되면서, 다만 위 반박권의 제도는 언론매체의 종류에 따라 1987. 11. 28. 각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의 해당 개소에 그대로 수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수용과정에서 극히 약간의 발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는 바, 이는 다음의 2 가지이다. 첫째는, 언론중재제도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출석의무와 불출석시의 제재로서 합의간주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둘째로 범죄사실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보도된 자가 사후에 무죄 등의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 권익보호의 확충을 도모한 것이었다.

2.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그 방안

가. 그러나 위 1987. 11. 28. 자의 개정의 근본 목적은 언론기본법의 폐지에 있었지, 좀더 근본적으로 반박권제도 및 언론중재제도의 발전적 개선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의 정도로는 언론중재의 실무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개정이 있는 이후에도 관심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보다 근원적인 개정방안이 수시로 논의되어졌고, 그 일환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1991. 8. 22.부터 24 일까지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991 년도 세미나가 열렸고(주제발표자: 박용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다시 1992. 8. 26.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론보도청구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주제로 1992 년도 세미나가 열렸었다(주제발표자: 양삼승,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나. 위와 같은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명백하게 된 문제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에 있다. 즉, 첫째는, 현재의 법률규정의 내용과 중재위원회의 실무내용과의 커다란 괴리이다. 즉,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정정보도로 되어있는 관계상, 중재위원회의 실무에 있어서는 민법 제 76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정보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행의 중재제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약 10 여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 절차 · 제도 등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 이와 같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위 두 차례의 세미나에서 각 주제발표자에 의해 각개의 법률안이 제시되었다. 그 각 법률안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상세히 옮길 필요는 없겠으나 그 요지는 ① 「정정보도의 제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정간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반론권」의 제도와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함은 이론상 적절치 아니하므로, 「반론권」만을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② 종래의 반론권 제도를 실무운영의 경험에 비추어 대폭 정비하며, ③ 가능하면, 반박권 제도를 독립된 단일법안으로 규정하고 ④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기능 이외에도 광범위한 사전 · 사후적인 언론피해 방지 · 구제 권한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기구로 승격시키자는 것들이었다.

II. 개정안의 기본방향

1. 발상의 전환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 내지는 개선 논의의 밑바닥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정간물법 제 16 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는 실질적으로는 반박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은 다른 곳에서 이미 누차 언급하였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만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본업무로 생각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만 그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시도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틀 안에서만 개선안을 생각하다 보니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항상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즉 위조문의 용어가 「정정보도」라고 되어 있는 관계상,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언론중재제도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위 조문은 「반박권」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였고, 또한 중재위원회의 실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중재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정보도를 구해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아가 중재의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정정보도가 그 중추적인 중재의 대상으로 되어, 이를 토대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었다.

여기에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언론사의 이해가 위와 같다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현실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구태여 논리적·법리적으로만 따져서 위 법 제 16 조는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반박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힘든 설득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서 반박권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까지 정면으로 수용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수용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의 모든 방법을 중재하는 기구」로서 발전적·진취적으로 구성·이해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발상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자 나름의 법률안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물론 위와 같은 생각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여러 기회에 여러분들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은 곳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밝힌다.

2. 단일법의 제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망라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하고 이 권리구제의 방안 및 절차를 규율 하는 규정들은, 정간물법 및 방송법과는 그 규율의 대상도 다르고 기본체계도 다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는 단일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법안의 명칭에 대하여는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함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3. 규정의 내용

단일법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법안의 체계상 제 1 조에서 이 법안의 입법목적을 밝히고, 다음으로 제 2 조에서 이 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법안의 규정형식은 ① 먼저 실체법적인 조문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의 종류인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및 반박권의 각각의 권리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 다음 단계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③ 중재 기일에 있어서 중재부에서의 중재과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④ 중재결과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대한 사항 ⑤ 위 중재결정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⑥ 이의신청의 결과, 특히 반박보도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의 제소, 법원에서의 심리, 재판, 집행 및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⑦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그 중요부분을 좀더 상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III. 손해배상청구

1. 언론에 공표된 잘못된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재산상 및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에 기하여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다만 이를 명백히 나타내고 또한 그 청구의 상대방을 「언론사」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해두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법률안 제 3 조).

2.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 행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인 보도의 본문 또는 사본이나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를 첨부하도록 하고, 또한 중재과정에 있어서의 조정의 편의를 위하여 배상을 구하는 액수를 특정하여(즉 중재위원회에서 적절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여 달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법률안 제 4 조).

3.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로 되는 점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서다.

원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 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면 족한 것이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는 항상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문제로 된 후 조속한 기간 내에 이로 인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려는 원래의 중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반면, 위 취지만을 강조하여 단기간 내에만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의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넓게 보장되고 있는 권한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의 단기간 내에(즉, 반박권의 행사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법률안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5 항 참조).

4. 끝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중재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될 점이 있다. 즉, 본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 즉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범위의 확정 및 인정된 손해의 금전적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극히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로서, 쌍방의 이의의 여지가 없이 그 배상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견해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아예 언론중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신속한 중재의 성취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침해로 인한 분쟁의 모든 것을 중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여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액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해 버릴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론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문제점들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히 밝혀지고 그 해결의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손해배상의 문제 특히 그 배상액수의 문제 때문에 중재의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재부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문제만을 별도로 취급하여 불성립의 상태로 남겨두고서라도, 나머지의 사항들에 대하여서만이라도 확정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IV. 정정보도의 청구

1. 명예회복방법 개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여 배상하는 방법 이외에 직접적으로 그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도 역시 필요하게 되는 바, 민법은 이와 같은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도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상 위 명예회복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는 먼저 사죄광고의 방법이 있다. 이 사죄광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도된 사실관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사죄·사과의 의사표시까지를 함께 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죄광고에 대하여는 특히 후자의 구성요소 즉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 점에 관련하여 종래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는 단순히 잘못을 사과하는 의미의 정도의 것이면 반드시 위헌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위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위 사죄광고의 방법은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사죄광고의 다음으로 명예회복에 효과가 있는 방법은 정정보도의 방법이다.

정정보도라고 하는 명예회복방법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어떠한 사실보도를 한 언론기관 스스로가 그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그 사실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 즉 사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에서 사죄광고와 다른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나 검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정정보도의 방법인 「취소」 즉 어떤 사실적 보도가 진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아니함을 밝혀서 이를 이유로 그 사실적 보도를 취소하는 방법만을 염두에 두어왔다. 그러나 이 취소의 방법은, 언론기관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인정하는 것인 만큼, 기사의 공정성·정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기관의 처지에서는 극히 혐오해 마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취소의 방법에 의한 정정보도는 언론기관의 명예심·자존심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이를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원만한 타협을 이루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정정보도의 방법으로서 「취소」 이외에 이와 좀더 완화된 형태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 좀더 다양한 타협의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정보도방법으로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연혁적, 이론적으로는 명예회복방법의 일종인 정정보도의 경우와 그 배경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민법상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일종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반론권」의 제도가 있다. 즉 반박권의 제도는 정정보도의 경우와 같이 사실보도를 한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보도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원문기사에 대하여 반론 내지는 반박의 기회를 부여 받아서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원문기사에 대한 반박자 스스로의 입장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 점이다. 보도를 한 언론사가 아니라, 보도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반박을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일반독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있으나, 그러한 점에서 정정보도에 다음가는 정도의 명예회복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사의 부담은 경감되는 결과로 되고, 따라서 정정보도에는 쉽게 응하지 아니하는 언론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반박권의 보도에는 쉽게 응할 수 있고, 그 결과 반론문의 보도에는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장점도 역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반박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1. 1. 부터 시행된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권리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이 반박권의 연혁·구체적 내용·권리의 성질, 행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미 연구자를 비롯한 몇몇 관심 있는 분에 의하여 여러 곳에서 논술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2. 취소(Widerruf)

앞서 본 정정보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더 상세히 고찰하여 보면 취소, 철회, 정오(바로잡음), 해명, 불유지, 보충, 제 3 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 잠정적인 의사표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먼저 취소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허위의 위법한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계속되는 침해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Widerruf)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취소청구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나는 이로써……한 주장을, 진실이 아니므로(unwahr) 또는 정확하지 아니하므로(unrichtig)취소한다」이다.

단순히 부정(취소)만을 하게 되면 진실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 기타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단순부정이 주장자의 불이익 한 모습을 남기는 경우) 추가로 「진실한 사건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변형된 취소).

예를 들면, 세 쌍둥이 출생의 주장에 대하여 세 쌍둥이는 아니라도 한 사람은 출생하였는지 또는 공갈주장에 대하여 협박은 있었는지의 점에 대한 언급과 같은 경우이다.

진실한 사실관계의 보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추측 억측을 예방하기 위하여)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형취소의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변형취소의 문안 예로서는 「A가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에 대하여 「진실은, 검찰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절차를 종결하였다」 또는 「A는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성명이 잘못 혼동되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철회(Rücknahme)

철회 (Rücknahme)는 취소(Widerruf)의 완화된 형태이다.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철회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철회를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철회의 내용에 따른다면, 이미 행해진 비난을 단순히 없애버린다는 결심에 기해서 철회한다는 것이다. 즉 철회자는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아니하는 만큼, 취소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철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 함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철회가 고려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서는 어떠한 주장이 실제로는 사실상의 주장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가치 평가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4. 정오(바로잡음)(Richtigstellung)

허위(Unwahrheit)와 부정확(Unrichtigkeit)과의 사이에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허위임이 증명된 때에만 인정될 수 있고, 단순한 부정확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하더라도, 「철회」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대신에

「바로잡음」(Richtigstellung)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바로잡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의사표시(즉 바로잡음)에 의하여 어떠한 체면실추 없이 가장 완화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주장을 바로잡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그 「주장을 완전히 취소한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완화된 형태인 것임은 분명하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자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것이다. BGH(독일 연방대법원)판결에 나타난 문안 예로서는 「나는, 나의 선거유세연설에서, X가 직접 나에게 대한 방해공작을 지시하였다고, X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X는 위 사건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나는 바로잡는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로잡음」이라는 형식은 어떠한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일부분만이 허위인 때, 또는 그 주장의 문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특정한 인상이 잘못된 것인 때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제반 정황에 의하여 잘못된 외관이 발생할 경우에도 역시 이용될 수 있다. 즉 LG(독일 주지방법원) 문안에(경찰관 사건)로서 연방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상품검사를 한 시험보고서에 대하여는, 이러한 배제의 청구가 「바로잡음의 형식」 즉 「법원은 위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짐이 옳다는 제안이 있다(Deutsch).

5. 해명(Klarstellung)

이 해명의 요구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는, 원진술자가 어떤 주장을 「명문으로」(wörtlich)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문맥으로부터 보면 그러한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즉 「숨겨진 주장」의 경우이다. BGH는 숨겨진 주장을 ① 원진술자가 스스로 개개의 주장으로부터 나타나는 총체적 주장을 은밀한 형태로 독자에게 제시하려고 한 경우와 ② 주장된 개개의 사실이 독자로 하여금 각자 그의 사고방식에 따라 연상작용을 하게끔 자극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이 구별은 이론상은 가능하나, 실제상은 어렵다. 이 「해명」의 방법이 유용한 경우는, 원진술자가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원진술자 스스로가 어떤 주장을 숨겨진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원진술자는, 그의 진술은 이러한 「확대된 주장」을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해명조의 부가문을 덧붙이기를 바랄 것이다.

BGH는 이 해명의 방법에 회의를 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이러한 연상작용을 일으킨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원진술자 스스로가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가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이므로, 앞서 본 바와는 경우가 다르다.

6. 불유지(유지하지 아니함)(Nichtaufrechterhalten)

어떠한 주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흔히 「제한된 취소」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불유지 내지는 제한된 취소의 청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즉 완전한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가결의 요건인,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증명」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진실하리라는 개연성의 증명만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자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비난의 진실성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BGHZ(독일 연방대법원 민사판례집), 37, 187 등).

진술과 진술만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즉, 양자간에 확증이 없는 경우에)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때에만, 바로 이 제한된 취소 즉 불유지가 청구될 수 있다. 그리고 불명확성(의문)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부담으로 된다(BGH, 즉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원고의 패소로 된다).

문제로 된 원진술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불유지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원칙은 사자에 관련된 주장에도 적용된다(BGH).

그리고, 이 불유지의 청구는, 의무자가 완전한 취소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주장의 시점에서는 진실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없었던 경우 및 ② 주장이 평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나아가, ③ 기자가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공표할 시점에 있어서는 이미 낡은 것(잘못된 것)으로 되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심리의 과정에서, 단지 제한된 취소(즉, 불유지)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확신에 다다르게 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그의 청구(즉, 완전한 취소의 청구)를 위 불유지의 청구로 축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에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느냐는 그의 자유이다. 흔히 이 제한된 취소(즉 불유지)의 대신에, 바로잡음(Richtigstellung)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7. 보충(Erganzung)

보도된 사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진술의 청구가 고려될 수 있고, 원래의 주장이 그 후에 발생한 사태에 의하여 진실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überholt)에는 「추후적인 보충」이 청구될 수 있다.

a) 정정적 보충(berichtigende Ergänzung)

정정적 보충은 「일부의 사실을 제외해 버림으로써 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문안 예로서는 「A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법원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는 내용을 보충적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충이 인용된 사안 예로서는 반박문을 보도함에 있어 (반박문임을 표시하는) 도입부를 삭제함으로써 독자편지와 같은 외관을 가지게 된 경우(예, 도입부를 보충하라고 명할 수 있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진술에 포함된 여러 사실 중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견차원의 문제」인 경우, 즉, 어떤 사실을 제거하는 것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정정적 보충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보충의 방법이 부정된 사안 예로서 문학사전을 편찬함에 있어서, 자서전적 사항의 선택과 관련하여 BGH는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b) 추후적 보충(nachtragliche Ergänzung)

BGH는 이 추후적 보충의 청구를 오로지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 후 행해진 「무죄판결」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통지의 공표(무죄 받은 사실)만 청구할 수 있고, 언론기관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청구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BGH의 견해는 아직 완전히 성숙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어떠한 보도내용이 「사후에 돌이켜보아서」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① 즉 어떤 상태가 종국적(endgültig)인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사실은 아닌 경우 ② 장래의 예측(진단)이 내려졌으나,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사태(즉, 보도자에 의하여 침해가 야기된 상태), 따라서 추후적 보충을 인정해야 할 사태가 존재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판결의 경우에만 추후적 보충이 허용된다는 BGH의 견해는 그 정당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문보도에서 혹시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 추후적 보충청구권은 없다. 그리고 형사판결이 후에 무죄로 된 경우 이외에도 쌍방 이해관계의 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수사의 개시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중지도 고려되어야 하고, 민사패소판결의 취소, 파산, 화해, 기타 유사절차의 취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래의 보도가 그 자체로서 정확한 것인 경우에는 마치 연재소설과 같이 문제된 사건의 모든 사후적인 발전단계에 대하여 각각 보도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장래의 예측이 잘못된 것인 경우에는 사후에 무죄판결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사후적인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법원이 단지 무죄판결의 경우에만 이 보충권을 인정해왔다는 사실은 언론기관 스스로가 거의 예외 없이 스스로 이 필요성을 배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부수적으로 이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자의로 배려(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추후적 보충청구권이 거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원래는 정확한 그러나 후에 부정확하게 된 기술이 아직 팔리지 아니한 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그 책에 삽입지를 꽂아 넣음으로써 이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자가 스스로 사후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예를 들면 SPD 당원으로 소개된 자가 인쇄 후 스스로 CDU 당원으로 되어버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추후적 보충청구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8. 제 3자의 주장을 전파한 사람의 책임(제 3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

제 3자의 주장을 전파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지적인 전파와 기술적인 전파가 구별되어야 한다.

(a) 지적인 전파의 경우 → 「거리를 둬」(Distanzierung)

어떤 사람이 제 3자의 주장을 지적인 전파자로서 전한 경우, 예를 들면 그 주장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 인용의 형태로써 전한 경우에는 취소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파자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으로부터 밀쳐낼 즉 그 주장과 거리를 둘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그 주장은 나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표시하는 등)(BGH).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는 전파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술자를 상대로 하여 원진술자로부터 취소를 구하거나 결국에는 전파자로부터 원진술자의 취소의 뜻을 공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위 거리를 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원래의 주장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안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 「거리를 두는 방법」 대신에 「바로잡음」을 지적인 전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옳다. 전파자가 원보도에 있어서 이미 거리를 둔 경우(즉 자기자신의 진술이 아니라고 이미 표시한 경우)에는 이 거리를 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거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뉴스보도, 뉴스논평, 독자편지란 등에서는 일반적인 언급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전파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즉, 이러한 난에 포함된 진술은 편집자의 견해와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논평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논평의 난에 있어서, 거리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명백하고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다.

(b) 기술적인 전파의 경우→ (정정적인 언급)(berichtigende Kommentierung)

타인의 주장을 단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경우 예를 들면 삽입지를 배포한 형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파자에 대하여는 하등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가 없고 단지 원래의 진술이 배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원 진술자의 「바로잡음」 내지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배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회람에 그 구성원의 의사를 끼워 넣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그 주장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마찬가지로 배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로 된 진술이 그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우선은 원진술자에 대하여 바로잡음의 청구를 하고 그 후에 그 전파자에 대하여 그 진술의 공표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지기술적인 전파자에 대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취소(Abgabe)를 청구할 수 있다. 광고지에 명백하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간지의 공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고지의 편집인이 그 명백하게 불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지에 삽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경우에는 그로부터 그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발간 하게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정적 언급의 내용은 반드시 그 삽입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는 특히 불진실의 증명을 필요로하고, 그럼으로써 그 전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원진술의 진실성의 내용에 관제해야 할 과제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이는 통상의 보상의무(Recherche)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정적 주석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문서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의 인용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간지의 삽입자에 대하여는 그 간지의 주장의 전파가 법원에 의하여 금지되었다는 내용과 같은 것 등이다(Deutsch).

9. 임시적인(잠정적인) 의사표시(einstweilige Erklärungen)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어떤 의사표시의 발표 특히 취소의 의사표시의 발표에 의하여 종국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이 피해자의 권익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고, 그러나 사실관계를 종국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극히 어렵거나 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잠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행해진 비난은 '잠정적으로' 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잠정적인 의사표시의 요구는 특히 형벌로써 처벌 받을 행위의 비난이 행해져서 이는 형사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민소법 제 149 조와 같이 절차의 종단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종국적 의사표시 특히 종국적인 취소의 의사표시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공격에 대하여 피해자를 무방비의 상태에 방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특히 이러한 공격이 형사절차의 풍토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잠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이 경우에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방법인 것이다. 제 3 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잠정적인 형태로서 요구될 수 있다

10. 정정보도방법의 종합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의 방법으로서, 이를 좀더 상세히 고찰해 보면 각종의, 약간씩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문제된 사실보도의 잘못됨을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정보도의 방법을 개발·연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언론사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협상방법을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합의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앞서 상세히 보아온 정정보도의 방법은 주로, 독일에서 연구되고 검토되어온 바를 그대로 옮겨 본 것이기 때문에 몇몇 항목에 따라서는 언어상의 차이점에 기한, 어감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체계하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조문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언어감각에 맞추어서 적절히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위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 위 정정보도의 방법 중, 「불유지」는 「바로잡음」의 방법으로 흡수하고 「거리를 둠」의 방법은 「해명」의 방법으로 흡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토대에서 위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보도청구의 일종으로서 「보충」의 방법이 인정되고, 그 한가지의 형태로서 추후적 보충이 인정되는 이상, 현행법의 규정에 따른 추후보도청구권은 바로 위 추후적 보충의 한가지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서 따로 이를 규정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정정보도의 종류) 정정보도는 잘못된 사실적 보도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취소: 사실적 보도가 진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취소한다. 다만, 단순한 취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취소에 덧붙여 진실한 사건의 경위를 밝힐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철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적 보도가, 형식적으로는 가치평가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등 취소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사실적 보도만을 철회한다.

③ 바로잡음: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적 보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정한다.

가. 사실적 보도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는 아니 하였으나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을 때

나. 사실적 보도의 일부만이 잘못된 것이거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는 인상을 느끼게 할 때

다. 사실적 보도의 시점에서는 진실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없었거나, 취재 이후 공표에 이르는 동안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

라. 기타 사실적 보도의 잘못된 정도, 잘못된 사실적 보도가 행해지게 된 경위와 언론 및 피해자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소나 정정의 방법에 의한 정정이 언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해명: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적 보도를 해명함으로써 정정한다.

가. 사실적 보도가 그 자체로서는 잘못된 내용을 명문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도의 문맥으로 보아 숨겨진 형태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

나. 제 3자의 잘못된 사실적 주장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적 보도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사실적 주장이 언론기관 자신의 주장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해명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잡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보충 : 사실적 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일부의 사실이 제외되어있거나, 또는 보도의 당시에는 진실이었으나 그 후 사태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로 된 경우에는 이를 보충함으로써 정정한다

⑥ 잠정적 바로잡음: 잘못된 사실적 보도를 종국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극히 어렵거나 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도가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잠정적으로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정한다.

V. 반론보도의 청구

반론권의 내용, 이론적 근거, 그 행사의 구체적 방법, 내용,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세히 언급된 바 있거나, 기존의

규정내용에 대하여 크게 다른 변경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래의 정간물법의 규정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서 산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사유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위 예외사유를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종래 정간물법상 예외사유의 하나로 「반론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학설상 또는 판례상 몇 가지의 경우들이 인정되어 왔었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위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정리해서 나열하였다.

그 구체적 규정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반론보도청구의 예외) 반론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하는 때에는 제 8 조의 반론문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

- ① 반론보도청구가 국회·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 ② 반론보도청구가 영업적인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때. 다만, 영업적이 아닌 의견광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게재 및 인쇄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법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반론보도청구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행해진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 ④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 ⑤ 반론문의 보도가 명예훼손등 범죄로 되거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
- ⑥ 가. 반론문의 보도가 반론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때.

나. 반론의 대상으로 한 보도가 반론인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써 반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때.

다. 당해 보도 또는 동등한 다른 보도에서 반론자에게 반론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사전에 부여 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때.

라. 보도 이후 반론의 제기 이전에 편집상 이미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보도된 때.

마. 기타 반론인이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 때.

VI. 반론권·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보완

1. 「반론권」으로 용어를 통일

보도된 사실의 진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하여 반론·반박·변명·해명등의 기회를 주는 권리에 대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 통일된 의견은 없었다. 외국의 입법예에서도, 나라에 따라서 또한 시대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의 개정안에서는 용어의 어감, 보충적 반론도 포함하여야

될 필요성, 일반인에의 친숙도 등을 고려 하여, 그 용어를 「반론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이 용어에 대해 이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2. 반론권등 「행사기문」의 보완

현행법은 반론권의 행사기간을 언론매체에 따라 구분하여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① 일간신문, 통신은 14 일, ②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1 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여 가능한 단시간 내에 언론사의 불안한 지위가 해소되도록 배려하고 있다(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 그러나 위 기간은 실무상 경험으로 보면, 외국여행 중이나 기타 사정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바꾸어서 언론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로 규정하고, 다만 이로 인한 언론사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보도가 있는 후 3 월」이 지나면, 위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률안 제 16 조 제 1 항). 위 1 개월 및 3 개월의 기간은 외국의 많은 입법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간인 점을 참작하였다.

3. 반론권등 「청구권자」의 보완

현행법상으로는 반론권의 청구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종래 민법이론상으로만 보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청구권자라고 잘못 오해 될 소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특히 관청, 기관, 기타 단체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 실질에 부합하는 반론권등의 행사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점을 명확히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청 또는 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이름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장이나 관리자가 위 기관 등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법률안 제 2 조 제 5 항).

4. 반론권등 「피청구인」의 보완

종래 반론권의 청구의 상대방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론권의 청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특히 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래 대법원의 예규에서도 청구인을 「언론사」로 하도록 정리하였으며, 외국의 실무에서도 이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피청구인을 「언론사」로 통일하여 규정하였다(법률안 제 5 조, 제 8 조).

5. 반론보도 내용의 「범위」의 보완

현행법의 규정은 반론문의 자수를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문이 원문보도에 대한 반론에 국한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론문이 실질적으로 원문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형식적으로 그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 외국의 판례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문보도의 「자수」가 아니라 원문보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한 것이다. (법률안 제 11 조 제 4 항).

Ⅶ. 중재위원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보완

1. 「기능」상의 보완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기능내지 권한은 근본적으로는 ① 반론권의 행사에 관하여서만 그 권한을 가지며, ②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언론사가 2 회 이상 불출석하여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의 권한은 없이 「조정」의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반론권 이외에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② 「조정」권능 이외에 실질적으로 「중재」권능까지도 중재위원회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언론침해에 대한 현행법상의 구제방법은 크게 나누어 민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① 손해배상 청구권, ②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즉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 그리고 특별법인 정간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반론권제도 등 3 가지의 제도가 있는 바, 법률안에는 분쟁의 일괄적 해결을 위해서 위 세가지 모두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를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중재위원회에 「조정」의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인 「중재」의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하여는 나중에 「중재절차의 보완」의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성」상의 보완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40 인 내지 70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는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되 그 중 5 분의 2 이상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정간물법 제 17 조 제 2 항).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므로, 즉 손해배상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도 그 대상이 되고 나아가 조정이 아닌 중재의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중재위원 중 5 분의 1 이상은 언론사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고(법률안 제 29 조), 또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법률안 제 30 조 제 1 항 제 2 호).

Ⅷ. 중재 「절차」 에 관한 보완(「중재권한의 부여」)

가.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활동의 결과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① 당사자간에 임의적인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및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불출석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2 가지 뿐이다. 즉 중재위원회의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권한 밖에 가지지 아니하여, 당사자 특히 언론사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방법이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중재제도가 결국은 권리의 실현만을 지연시킬 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중재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권한을 부여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하여야 하도록 하였다(법률안 제 19 조 제 5 항) (소위 의무중재 결정).

나. 다만, 모든 경우에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14 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하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거나 쌍방의 주장이 서로 합리성이 있어서, 좀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법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드시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 결정을 하는 대신에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법률안 제 19 조 제 7 항).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신청이 접수된 지 14 일 이내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나(정간물법 제 18 조 제 7 항), 이와 같이 불성립간주 조항을 두게 되면, 중재부에서 의도적으로 기간을 도과하여 중재성립에 소극적 자세로 임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여,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의 2 가지 중 한가지의 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이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결정에 절대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이 결정을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즉,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중재부의 결정에는 위와 같은 강제력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가지고 (위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다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이다(법률안 제 20 조 제 1 항)

라. 덧붙여서, 14 일 이내에 중재신청은 처리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부의 심리가 종료된 후 그 결정서의 작성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다시 7 일의 기간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은 배려하였다(법률안 제 19 조 제 5 항).

마.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길을 열어놓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남발하여 실질적으로 중재결정을 무력화시키게 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의신청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기하여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재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가 후에 법원의 재판에서 중재결정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비용 및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을 명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안 제 20 조 제 4 항).

IX. 「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보완

1. 제소절차에서의 보완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불성립결정이 있거나 또는 중재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심의의 결과 승소하게 된 경우, 피청구인이 그 판결의 내용대로 반론보도를 이행해 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 693 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강제의 신청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권리의 실현까지는 다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시간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위 간접강제의 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안 제 25 조 제 3 항).

2. 상소절차에서의 보완

가. 불복방법의 명시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변론과정을 거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내려진 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당연히 항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므로(정간물법 제 19 조 제 3 항), 일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에 의하더라도 불복이 가능하지 아니한가 하는 의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이 아닌 항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였다(법률안 제 26 조 제 1 항).

나. 반론보도청구 인용재판이 반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그 재판이 확정됨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러하여, 혹시 그 재판이 상급심에서 반복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보도해 버린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의 사후처리가 문제가 된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핑계로 내세워서, 인용된 반론보도재판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도구로 삼아 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법률안은 이러한 의문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백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즉 「위 불복절차에서 심리결과 반론보도청구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2 항의 경우 피고(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위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사용료로서 상당한 액수의 지급을 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 26 조의 제 2 항, 제 3 항).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익보호와 여론의 형성 및 언론의 공적 임무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언론이라 함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을 말한다.

②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1 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③ 방송이라 함은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 · 음악 · 오락 ·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④ 사실적 보도라 함은, 그 성질상 정당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진술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 의견의 표현, 가치평가 또는 미래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을 말한다.

⑤ 피해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사실적 보도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거나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입은 자를 말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청 또는 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피해자로 된다.

⑥ 언론사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손해배상청구) 언론에 공표된 잘못된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언론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 및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손해배상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사하며, 손해배상의 대상인 보도의 본문 또는 사본이나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를 첨부하여, 배상을 구하는 액수를 밝혀서 한다.

제 5 조(정정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잘못된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정정보도청구권은 서면 또는 구두로 행사하며 정정의 대상인 보도의 본문 또는 사본이나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보도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정정보도의 종류) 정정보도는 잘못된 사실적 보도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취소: 사실적 보도가 진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취소한다. 다만, 단순한 취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취소에 덧붙여 진실한 사건의 경위를 밝힐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철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적 보도가, 형식적으로는 가치평가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등 취소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사실적 보도만을 철회한다.

③ 바로잡음: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적 보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정한다.

가. 사실적 보도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는 아니 하였으나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은 경우

나. 사실적 보도의 일부만이 잘못된 것이거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경우

다. 사실적 보도의 시점에서는 진실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없었거나, 취재 이후 공표에 이르는 동안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

라. 기타 사실적 보도의 잘못된 정도, 잘못된 사실적 보도가 행해지게 된 경위와 언론 및 피해자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소나 정정의 방법에 의한 정정이 언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해명: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적 보도를 해명함으로써 정정한다.

가. 사실적 보도가 그 자체로서는 잘못된 내용을 명문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도의 문맥으로 보아 숨겨진 형태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

나. 제 3 자의 잘못된 사실적 주장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적 보도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사실적 주장이 언론기관 자신의 주장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으로 해명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잡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보충: 사실적 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일부의 사실이 제외되어있거나, 또는 보도의 당시에는 진실이었으나 그 후 사태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로 된 경우에는 이를 보충함으로써 정정한다.

⑥ 잠정적 바로잡음: 잘못된 사실적 보도를 종국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극히 어렵거나 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도가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잠정적으로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정한다.

제 8 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보도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무료로 그가 작성한 반론보도문의 게재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행해진 후 3 월이 경과하면 위 권리는 소멸한다.

제 9 조(반론보도체구의 예외) 반론보도청구의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때에는 제 8 조의 반론문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

① 반론보도청구가 국회·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② 반론보도청구가 영업적인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때. 다만, 영업적이 아닌 의견광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게재 및 인쇄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법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반론보도청구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행해진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④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⑤ 반론문의 보도가 명예훼손 등 범죄로 되거나 타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

⑥ 가. 반론문의 보도가 반론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때.

나. 반론의 대상으로 한 보도가 반론인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반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때.

다. 당해 보도 또는 동등한 다른 보도에서 반론자에게 반론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사전에 부여 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때.

라. 보도 이후 반론의 제기 이전에 편집상 이미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보도된 때.

마. 기타 반론인이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 때.

제 10 조(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반론보도청구권은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이의대상인 보도의 본문 또는 사본이나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보도를 구하는 반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반론보도문의 내용 등) ① 반론보도문에는 「반론문」 기타 원문보도의 제목에 상응하는 내용의 제목을 붙일 수 있다.

② 반론문의 내용은 언론의 사실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를 반론하는 사실상의 진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실상의 진술에 국한된다.

③ 반론문의 끝에는 작성자로서 반론보도신청인을 성명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반론문은 이의대상인 원보도와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범위 안에서 제 2 항의 진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반론문의 크기와 자수가 이의대상인 사실보도의 크기와 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언론사의 의무) ① 반론문의 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지체 없이 청구인 또는 대리인과 반론문의 제목, 내용 및 크기, 보도할 시기, 보도할 판 및 부위, 활자크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 후 언론사는 일간신문과 통신 및 방송의 경우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 호에 반론문을 보도하여야 한다.

③ 반론문은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함이 없이 이의대상인 사실보도와 동등한 공표효과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반론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재신청) 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자,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반론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제 8 조 제 1 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그에 관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 조, 제 6 조, 제 10 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각 지역 중재부에서 중재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각 지역 중재부에 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기간의 제한 및 중재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중재기관)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그 장은 법관으로 한다.

② 중재절차는 중재부의 장이 주재한다.

③ 중재위원 또는 중재담당자 기타 언론중재위원회 직원과 위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과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진행상황 및 합의과정에서 진술된 중재위원의 의견이나 그 찬반의 수를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기일전의 절차) ① 중재부의 장은 지체 없이 중재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5 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발행인(또는 편성책임자)으로 하여금 분쟁된 사실보도가 보도된 정기간행물 또는 통신문이나 그 사본(방송된 내용의 녹음, 녹화테이프)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중재기일) ① 중재부의 장은 중재신청서의 접수 후 14 일 이내에 중재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의 기일은 2 차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2 차 기일은 최초의 기일 후 14 일 이내로 지정하여 야 한다.

④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

⑤ 제 3 항의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⑥ 신청인이 2 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중재 기일의 절차) ① 중재 기일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재부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중재 기일에서의 사건의 심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의한 증거자료에 의한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 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재부는 손해배상의 액,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의 제목, 내용 및 크기, 보도할 시기, 보도할 판 및 부위, 활자크기 기타 필요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가 이의대상인 원보도와 동등한 공표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제 2 차 기일에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기일의 진행경과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8 조(중재 기일의 화해) ① 중재 기일에 손해배상의 액,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 합의가 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위 조서에 의한 집행에는 민사소송법 제 693 조를 준용한다.

제 19 조(중재부의 결정) ① 중재부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이 제 13 조 제 2 항 소정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중재각하결정).

- ② 중재부는 중재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중재기각결정).
- ③ 피신청인이 중재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중재신청서의 신청취지에 따른 중재결정을 할 수 있다(거제중재결정).
- ④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에 그 중재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임의중재결정).
- ⑤ 중재부가 제 1 항 내지 제 4 항 소정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 2 차 기일 또는 그 후 7 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의무중재결정).
- ⑥ 본 조의 결정은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⑦ 제 5 항의 기간 내에 중재결정을 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제 20 조(이의신청 및 결정의 효력) ① 당사자는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위 결정을 한 중재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②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중재부의 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제 19 조 제 4 항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1 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결정도 같다.
- ④ 중재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가 후에 법원의 재판에서 중재결정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비용 및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을 명하거나 손해배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제 21 조(준용법률 및 수권규정)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반론보도청구의 소)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효력이 상실함을 안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 19 조 제 1 항의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이 진행 된다.
- ③ 반론보도청구의 소장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은 정기간행물 또는 통신이 발행되는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 23 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리) ①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697 조 및 제 705 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③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행한 공격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 접수 후 지체 없이 관할 중재부에 관련 중재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 24 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 ①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제 9 조(반론보도청구의 행사), 제 11 조(반론보도문의 내용 등), 제 12 조(발행인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인에게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명한다.

② 제 25 조 제 3 항(간접강제 신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 693 조(간접강제)에 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70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소명 대용의 담보, 담보조건부가압류)과 제 702 조(가압류해방금액)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의 소장 접수 후 2 개월 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제 25 조(집행)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 제 708 조 제 2 항(집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제 1 항의 신청은 제 22 조의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 26 조(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위 불복절차에서 심리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 피고(발행인)가 이미 반론보도청구의 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문의 보도와 위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사용료로써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 27 조(수권규정)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28 조(설치) 언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9 조(구합) 중재위원회는 40 인 이상 7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 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5 분의 1 이상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 한다.

제 30 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2. 현직 언론인.
3.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와 교육공무원은 제외).
4. 국가 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제 31 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 32 조(조직) ①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 인을 두되 위원총회에서 호선한다.

-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총회, 중앙위원회,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감사, 중재부를 둔다.
- ④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 33 조(직무) ①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신청사항.
 2. 언론에 의한 침해사항.
 3.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진정하거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중재위원회의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② 중재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위 보고서에 관하여 정기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4 조(위원의 임기 및 대우)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은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 28 조,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재정) ①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광고방송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예산은 공보처 장관의 서면에 의한 의견을 들은 후 위원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중재위원회의 결산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위원총회에서 승인한다. ④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중재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을 배정 영달하여야 한다.

제 37 조(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인, 편집인, 편성책임자 또는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 38 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위임규정) 중재위원회의 조직, 직무, 위원의 대우, 재정, 회의, 시정권고 절차, 사무처의 기구 및 직원의 대우, 기타 중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3 장(제 16 조 내지 제 21 조) 및 방송법 제 6 장(제 41 조, 제 42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5 장(제 45 조)은 이를 삭제한다.